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증명 여부	한글	정낙용	인물평	
	한자	鄭洛鎔	이명	자 景龜 / 호 之圓
		1827년 11월 24일	사망 연월일	1914년 2월 1일
본적		京城府 中部 板井洞 67통 8호 [1914년 주소]		
1904년 이전				
주요 경력	1827.11.24	출생 (연일정씨세보 권지2, 포은공파)		
	1855. 4.	무과 급제 (조선귀족열전, 228쪽; 조선신사보감 귀족부[1914], 56쪽)		
	1857. 6. ~1859.12.	宣傳官, 司僕內乘 (같은 자료)		
	1861. 6. ~1874.	수안 군수, 태안 군수, 태안 부사, 전라좌수사, 우부승지, 죽산 부사, 전라수사, 남양 부사 역임 (같은 자료)		
	1879. 1.13	삼도수군 통제사 (고종실록, 1879년 1월 13일)		
	1882.12.29	한성부 우윤 (승정원일기, 1882년 12월 29일)		
	1883. 4.23	병조 참판 (승정원일기, 1883년 4월 23일)		
	1883. 7. 4~1884.12.29	부정 비리로 인해 智島로 귀양 (고종실록, 1883년 7월 4일, 1884년 12월 29일)		
	1885. 7.15	좌변포도대장 (고종실록, 1885년 7월 15일)		
	1885. 8.27~1887. 4.24	親軍後營使 (고종실록, 1885년 8월 27일, 1887년 4월 24일)		
	1885. 8.28	협판 내무부사 (승정원일기, 1885년 8월 28일)		

	1885. 9.17	형조 판서 (승정원일기, 1885년 9월 17일)
	1886. 1.28	典圜局 總辦 (고종실록, 1886년 1월 28일)
	1886. 3.26	공조 판서 (고종실록, 1886년 3월 26일)
	1887.12.26	형조 판서 (고종실록, 1887년 12월 26일)
	1888. 1.30~1889. 3.24	강화부 유수 겸임 내무부 협판 (고종실록, 1888년 1월 30일)
	1889. 3.24~1889. 8. 5	평안도 병마절도사 (고종실록, 1889년 3월 24일, 8월 5일)
	1894. 5. 9	한성부 판윤
	1896. 8. 5~1896. 9.29	(고종실록, 1894년 5월 9일; 승정원일기, 1896년 6월 26일, 8월 23일)
	1896. 5.24	중추원 1등 의관
	1896.11.17	(고종실록, 1896년 5월 24일, 11월 17일, 1898년 7월 8일)
	1898. 7. 8	
	1897. 7.12~1897.10. 1	시종원경 (고종실록, 1897년 7월 12일)
	1897.10. 1	농상공부 대신 (고종실록, 1897년 10월 1일)
	1897.11. 7~1897.12.14	농상공부 대신 겸임 임시서리 탁지부 대신사무 (승정원일기, 1897년 10월 13일, 11월 21일;)
	1898. 4.30~1898. 7. 8	궁내부 특진관
	1898.12.31~1899.10.16	(고종실록, 1898년 4월 30일, 12월 31일, 1900년 8월 16일; 황성신문, 1899년 1월 5일, 10월 18일)
	1900. 8.16	
	1899.10.16~1900. 3.15	중추원 의장 (승정원일기, 1899년 9월 12일, 1900년 2월 15일)
	1900. 4.25~1900. 7.12	시종원경 (승정원일기, 1900년 3월 26일, 6월 16일; 황성신문, 1900년 4월 28일, 7월 16일)

1904년 ~ 1945년

1904. 9.27 1904.12. 7~1905. 1. 6 1905. 7. 2~1905. 7.12	궁내부 특진관 (고종실록, 1904년 9월 27일, 12월 7일, 1905년 7월 2일;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13일, 1905년 1월 11일; 황성신문, 1905년 7월 6일, 15일)
1910.10. 7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8일, 9일, 11일, 1911년 2월 23일)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齋藤實文書 100.6]; 朝鮮貴族略歷[齋藤實文書100.4];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3년 5월 23일 부록)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종4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1914. 2. 1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2월 4일; 매일신보, 1914년 2월 7일)

조 가 대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남작 수작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朝鮮貴族令에 의거 일본정부로부터 男爵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男爵 鄭洛鎔”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者氏名」.

“授爵子가 左와 如다더라. (중략) △ 男爵의 部 (중략) 鄭洛鎔 (후략)”

▶ 『매일신보』, 1910년 10월 11일, 「敍작者の 喜悅」.

“敍작의 榮典에 浴한 사람의 喜悅은 실로 상상키 難하도다. 其 일례를 舉하야 言하건대 (중략) 鄭洛鎔 삼씨는 세인이 皆云 其 □은 此 榮典을 接키 難하리라 하더니 意外에 此事が 有한 고로 (중략) 其餘는 물론 某家하고 比々皆然하야 大酒宴을 設하고 徹夜하여 祝意를 表한다더라.”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國分 人事局長, 桑原 秘書官, 藤波 通譯官, 陶山 通譯官이 列席한 후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爵記 本書 奉授式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석한 자의 씨명은 左와 같더라. (중략) 소[남작 - 작성자] 정낙용 (후략)”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續陰晴史』 권14(庚戌[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韓民』, 1936년 8월 29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男爵을 수작함.

【참고사항】 작위 세습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3월 24일.

“大正三年三月十九日 故 男爵 鄭洛鎔 相續人 鄭周永 襲爵被仰付”

- 출전: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毎日申報』, 1914년 3월 26일.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일본정부로부터 25,000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함.

▶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야 하사하신 귀족 班族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 어려 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오전에 교부받은 자는 45명이니 (중략) 동[남작-인용자] 정나옹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2) 서훈 및 서위

▶ 일본내각, 『관보』, 1913년 5월 23일 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四十五年勅令第五十六號>에 의거 韓國併合記念章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1912년 12월 7일 일본정부로부터 종4위에 서위됨.

판 단

- 정낙용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7일, 일본정부로부터 합병에 관한 공로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이후 1914년 2월 1일 사망하기 전까지 작위를 유지하였으며, 사후 아들 정주영에게 세습되었다. 정낙용의 남작 수작(受爵)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행위에 해당한다.
- 정낙용은 한일합병 후 일본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12월 7일 종4위에 서위되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정낙용은 한일합병 이후 남작의 작위를 받고,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수여하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종4위에 서위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낙용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7호, 19호에서 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2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